

세계지방자치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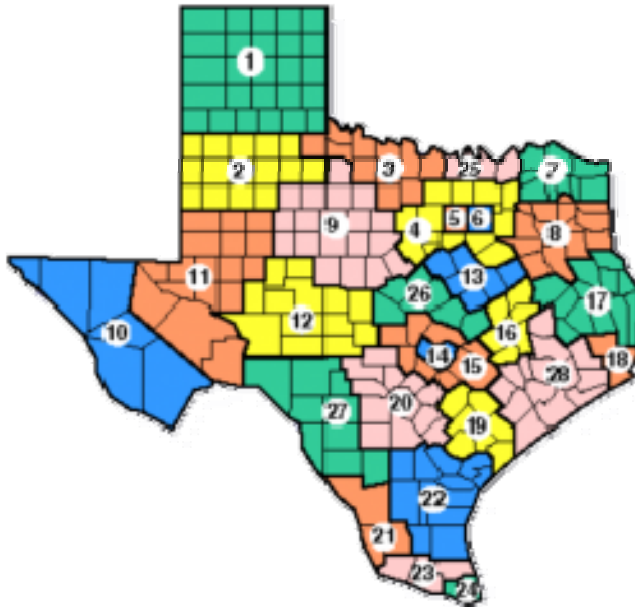


- (독일) 독일 노르트라인-베스트팔렌(Nordrhein-Westfalen) 주의 영유아보육 현황 및 자원분담
- (미국) 텍사스 주 보육 서비스 자원분담 구조 및 방식
: 아동양육 및 발달기금(Child Care and Development Fund, CCDF)
- (일본) 일본의 아동 보육 관련 중앙정부-지방정부 간 자원분담 구조
- (일본) 일본의 아동·육아 지원신제도 관련 주요 시책과 예산

텍사스 주 보육 서비스 자원부담 구조 및 방식 : 아동양육 및 발달기금 (Child Care and Development Fund, CCDF)

기금의 개요

- 미국의 아동양육 프로그램의 운영은 각 주에서 담당하며, 연방정부는 “아동양육 및 발달기금 (Child Care and Development Fund: CCDF)”을 통해 재정을 지원함
- 각 주에서는 연방정부의 가이드라인 내에서 자율적으로 기금을 운용할 수 있음
- 텍사스 주의 CCDF는 텍사스 주 노동위원회 (Texas Workforce Commission: TWF)에 의해 관리되며, 28개의 지역 인력개발위원회 (Workforce Development Board)가 기금을 집행함



| 그림 1 | 텍사스 주의 인력개발위원회(Workforce Development Board) 구성

- TWC는 저소득 가정의 자녀양육을 보조하는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부모가 취업 및 직업훈련이나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장기적인 자립활동을 도모함
- 또한 저소득 가정의 부모들에게 양질의 보육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아동의 교육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

기금의 구성

- CCDF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기금을 조달하며, 크게 세 가지 기금 유형 (의무, 매칭, 재량 기금)으로 구성됨
 - 1) **재량 기금 (Discretionary Funds)**은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기금으로 5세 미만 영유아 비율, 급식 지원 수혜자 비율, 그리고 지역의 1인당 소득수준의 세 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각 주에 분배되는 기금임
 - 2) **의무기금 (Mandatory Funds)**은 연방기금으로 1994회계년도나 1995회계년도, 혹은 FY1992-1994동안 평균적으로 배분된 연방기금을 기준으로 각주에 배분되며, AFDC (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)관련 보육프로그램을 위한 기금임
 - 3) **매칭 펀드 (Matching Fund)**는 의회가 책정하여 사회보장법에 명시한 금액과 각 주에 분배된 의무기금의 차이를 보전해주는 기금임
- 매칭 펀드는 전체 13세 미만 인구 대비 해당 주의 13세 미만 인구를 기준으로 책정되며 배분년도 2년 전의 최대치를 기준으로 함
- 매칭 펀드를 수령하기 위해서 각 주는 최소한 사회보장법에 명시된 주 정부 의무지출액 이상의 비-연방 기금을 지출해야 하며, 해당 지출은 “Child Care and Development Block Grant Act of 1990”의 목적에 부합하는 서비스 및 활동에 대한 것이어야 함
- 매칭 펀드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지출에는 주, 카운티, 시 정부 등 지방정부기관이 출연한 기금 및 민간으로부터의 기부를 통해 조성된 기금을 바탕으로 한 지출이 포함됨

근거 법령

- CCDF는 크게 “Child Care and Development Block Grant Act (CDBG) of 2014”와 “Section 418 of the Social Security Act”에 그 근거를 두고 있음
- CDBG는 주 정부의 의무, 서비스 제공기관 혹은 시설에 대한 의무사항, 관련 인력의 교육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, 사회보장법의 Section 418에서는 보육기금의 책정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

- 또한 연방기준집 (Code of Federal Regulations)의 Title 45, Part 98에서는 기금의 목적, 운영, 서비스 수혜자격, 보고의무 등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 및 정리하고 있음
- 각 주에서는 CCDF를 비롯한 보육관련 기금 운용을 위한 구체적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음

기금의 운용

- 보육기금의 구체적 수급자격 및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주마다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음
- CCDF는 기본적으로 저소득 근로 가구에 대한 아동양육 서비스를 비용을 보조하고 관련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활용됨
- 연방기준집에서는 기금의 활용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음
- 각 주는 총 CCDF 금액의 7~9 퍼센트를 보육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양질의 보육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는데 사용해야 함
- CCDF의 관리비용은 전체 기금의 5%를 초과할 수 없음
- 의무기금과 연방 및 주정부에 할당된 매칭 펀드의 최소 70퍼센트는 연방법에서 정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사용해야 함
- 이외의 재량기금에 대해서는 최소 의무사항을 제외한 운영 및 활용의 재량권을 주정부에 부여하고 있음

텍사스 주의 기금 구성 및 운용

- 다른 여러 주들과 마찬가지로 텍사스 주의 보육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은 주로 연방기금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
- 2020년 기준 텍사스주 노동위원회 운영 예산보고서에 따르면, 보육관련 항목에 대한 전체 예산은 약 9.3억 달러였음
- 이 중 연방기금은 약 7.6억 달러로 전체 보육관련 예산의 약 82퍼센트를 차지하였음
- 이외 지방정부 출연기금 및 민간 기부금을 통해 조성된 기금은 약 1.7억 달러로 전체 보육관련 예산의 약 18 퍼센트를 차지하였음
- 텍사스 주는 CCDF와 보육 서비스에 사용되는 기타 기금들에 대하여 연방 및 주정부의 의무사항을 반영하고 보육 서비스의 개선 활동 등을 관리하기 위해 관련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
- 텍사스 주의 경우 13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구 (장애 아동의 경우 19세 이하)가 보육서비스 지원의 수급자격을 가지며, 수혜가구는 주 정부와 지방정부의 요구조건을 충족하는 보육 서비스 제공자들 중에서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지 선택할 수 있음

- 보육시설에 대한 기준 및 수급자격에 대한 세부사항은 각 지역의 인력개발위원회 (Workforce Development Board)마다 상이할 수 있음

자료 출처

- The Office of Child Care.
(<https://www.acf.hhs.gov/occ>)
- Section 418 of the Social Security Act
(https://www.ssa.gov/OP_Home/ssact/title04/0418.htm)
- Texas Administrative Code Title 40
([https://texreg.sos.state.tx.us/public/readtac\\$ext.ViewTAC?tac_view=2&ti=40](https://texreg.sos.state.tx.us/public/readtac$ext.ViewTAC?tac_view=2&ti=40))
- CCDF Homepage
(<https://childcareta.acf.hhs.gov/ccdf-fundamentals>)
- Texas Rising Stars
(<https://texasrisingstar.org/>)
- Texas Workforce Commission Financial & Grant Information
(<https://www.twc.texas.gov/agency/texas-workforce-commission-financial-grant-information>)
- Legal Information Institute: 45 CFR Part 98
(<https://www.law.cornell.edu/cfr/text/45/part-98>)

김진탁 통신원

(University of North Texas 행정학과 박사과정)
kjtstar6@gmail.com